

1. 국가 경영

(1) 기근

① 식량난

함길도의 화주에 흙이 있는데, 빛깔과 성질이 밀과 같았다. 굶주린 백성들이 이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으며,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, 그 맛은 메밀 음식과 비슷하였다. (세종 5/3/13)

황해도 봉산(鳳山) 서면(西面)의 백토(白土)와 서흥(瑞興) 남산(南山)의 백적토(白赤土)는 단맛이 있다 하여, 굶주린 백성들이 파서 쌀가루를 섞어 먹어 요기하였다. (세종 5/4/21)

② 구언교지

마음껏 직언해,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지극한 생각에 부응하라. (세종 5/4/25)

의정부와 육조가 의논해 23조목을 골라서 계하니, 임금의 친히 재단(裁斷)하였다. (세종 5/4/27)

정부·육조가 회의를 37조목을 골라 아뢰니, 예조에 내려 행할 만한 것을 아뢰게(세종 5/4/28)
예조 11인의 17가지 제안 (세종 5/5/28)

③ 구휼 상황 파악

황해·강원·평안도에 환관을 파견하여 수령의 구제상황을 살피게 하다. (세종 5/5/3)

백성을 굶어 죽게한 수령의 처벌 (세종 5/6/6; 5/6/8; 5/6/9; 5/6/10; 5/6/15 etc.)

임금이 수령들의 직책수행상의 폐단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케 하다. 공조참판 황상이 “이민(吏民)들이 수령을 소송하는 것을 금하지 마소서.” (이조판서 허조가 반대하니) 임금이 “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. 그 폐단이 생긴 뒤에 그때그때 적당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.”(세종 5/6/8)

찰방을 각도에 파견하여 민폐자를 보고케 하다. (세종 5/10/3)

사냥으로 민폐를 야기시킨 도절제사 심보를 파면하다. (세종 5/10/10)

④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

"술 한 잔이 하늘의 뜻을 돌릴 힘은 없으나, 마음에는 실로 미안함이 있다." (세종 5/5/6)

하늘이 가물어, 마음이 글에 있지 않으므로 경연에 나아가지 않는다. (세종 5/7/12) (7/17 재개)

⑤ 선군·관사의 노비 등의 유망流亡

한 도의 유망된 수가 7천여 명 -중략- 군역이 날로 줄어들 뿐 아니라, 관사의 공역(貢役) 노비도 감하여 가니, 그들이 때를 지어 도적질" -중략- "각도의 유이된 인물은 올 가을에 조관(朝官)을 보내 찾아서 본디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논죄는 《육전(六典)》에 의해 시행(세종 5/5/18)

(2) 백성 살리는 마음

전옥서(典獄署)에 교지를 내리어, 죄수들 중에 병고(病告)한 자는 죄의 경중을 논하지 말고 모두 동·서 활인원(東西活人院)으로 옮겨서 구료(救療)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였다. (세종 5/3/4)

국상으로 인해 적체된 사형수들 중, 정상과 법률을 참작하여 논단돼야 할 자가 계류되어 고통을 겪다가 비명에 죽는 자도 있을 것이니 불쌍하고 민망하다. 다 조사하여 올리라. (세종 5/10/8)

(3) 저화

"흉년을 당하여 민간에서 무역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 편의를 보게 하라." 고 하였다. 명령이 내리매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. (세종 5/1/16)

당(唐) 개원전(開元錢)으로 표준을 삼아 동전 '조선통보(朝鮮通寶)'의 주조를 의논 (세종 5/9/16)

(4) 외교 및 국방

① 무기

중국 것과 다른 우리의 소화통(小火筒) 125자루 제작 (세종 5/1/9)

② 봉화를 서울 남산에 다섯 곳 설치 (세종 5/2/26)

③ 중국

ㄱ. 달달達達 정벌

"북경의 서쪽 침전에 화재가 났고, 또 달달의 수만 명 군사가 중원(中原)으로 쳐들어오니, 황제가 장차(7월 24일)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고자 합니다." (세종 5/2/17, 완료 세종 5/11/5)

ㄴ. 말 1만마리 무역

이조판서 허조·병조판서 조말생이 중국 측 요구한 말 1만필을 5천필로 줄이자 건의(세종 5/8/2)

중국 황제의 칙서문 : 이향으로 조선국 왕세자를 삼는다. 왕은 즉시 말 1만필을 뽑아 바치어 국용(國用)을 도우라. 노왕(老王, 태종) 때에 부리던 환자 30 내지 50인을 바치라. (세종 5/8/18)

말 운송 (세종 5/8/20; 5/8/26; 5/9/2; 5/9/8; 5/9/14; 5/9/23; 5/9/26; 5/10/3; 5/10/3; 5/10/8; 5/10/14; 5/10/15; 5/10/22, 총 10000-726=9274필)

1만 필을 11운(運)으로 나누어서 관원을 보내어 요동 도사에게로 발송을 종료하였더니 -중략- 돌아온 말의 필수에 의거하여 다시 발송하려 하오나 -중략- 내년 봄을 기다려서(세종 5/11/18)

ㄷ. 환관 진헌

전국에서 뽑은 소화자(小火者) 24명을 북경에 가게 하였는데 연령은 11-21세. (세종 5/9/9) ¹

ㄹ. 사신의 횡포

“그의 청구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” (세종 5/9/27)

예조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지응하는 폐단 시정조건을 아뢰다. (세종 5/10/3)

④ 일본

왜인 24인이 귀화 (세종 5/2/21)

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,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 이를 주려고 하매,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"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,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좇다가,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, 이는 먼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못됩니다." (세종 5/12/25)

⑤ 야인

함길도가 근년에 농사를 실패하고, 창고가 다 비어, 백성들이 먹기에 곤란하니, 야인들의 밭을 끊

¹ 태조 때부터 발견됨(태조 2/7/13)

게 하는데, 그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풍년 든 다른 도에 가서 얻어먹게 효유하고, 야인들의 상황을 사람을 보내 정탐하여 보고하도록 하다. (세종 5/12/11)

(5) 인재 경영

① 몽고학

"몽학(蒙學) 생도의 수효가 적으니, 전라도·경상도와 서울 안의 오부학당 중에서 나이가 젊고 총명 민첩한 사람을 가려, 사역원(司譯院)에 보내어 몽고말을 배우도록 할 것" (세종 5/1/27)

② 음악

악공이 상시로 익히는 악기 재료는 관에서 미리 준비하게 하다. (세종 5/2/4)

가무를 마음껏 익히도록, 봉상시(奉常寺)의 재랑(齋郎)의 서용 절차를 아뢰다. (세종 5/2/4)

기예가 성숙한 사람을 계승하도록, 6품으로 거관한 악공을 계속 벼슬시키게 하다. (세종 5/2/5)

③ 천문학

당(唐)의 《선명력(宣明曆)》과 원(元)의 《수시력(授時曆)》과 《보교회보중성력요(步交會步中星曆要)》 등의 서적의 차이점을 교정 (세종 5/2/10)

④ 의학

제생원 의녀 중에 나이 젊고 총명한 3,4인을 뽑아 교훈을 더 시켜 문리를 통하게 (세종 5/3/17)

《천자》·《효경》·《정속편》 등 가르쳐 문자를 대강 해득하게 한 뒤에 선발 (세종 5/12/27)

의정부참찬으로 치사(致仕)한 허도(許衢)가 부인병 치료 위한 여의의 양성을 건의(세종 5/11/28)

외방 의녀는 충청·경상·전라도 관비 중 10-15세 영리한 동녀(童女) 2명씩 선택(세종 5/12/4)

⑤ 율학律學의 임명 및 근태관리 (세종 5/6/23)

⑥ 풍수학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 사람을 매년 서운관의 녹 있는 관직에 서용 (세종 5/11/15)

⑦ 산수에 능통한 산학박사(≡회계사)는 사대부 가문의 자제로 시험하여 서용 (세종 5/11/15)

⑧ 과거의 문제를 친해 내었다. (세종 5/3/28)

⑨ 역사 기록

“사관(史官) 한 사람이 다만 조계(朝啓)할 때에 둘러가며 참석하여 일을 기록하니, 국가의 일을 어찌 다 알아서 기재하겠는가.” 집현전 관원에게 춘추(春秋)를 검직시켰다. (세종 5/6/24)

지신사 조서로가 사관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여, 환자들로 하여금 <사관을>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-중략- "대언이 대궐에 들어와서 계사할 때에 사관도 따라 들어오게" (세종 5/7/25)

춘추관의 지관사 변계량과 동지관사 윤희 등이 정종·태종 실록의 편찬을 건의하다(세종 5/12/24)

사초(史草)를 서울은 영락 22년(세종 6년) 2월 그믐날까지, 경기·충청·황해·강원도 등은 3월 그믐날까지, 경상·전라·평안·함길도는 4월 그믐날까지를 한도로 하여 일체로 모두 수납케 하고, 미납하는 자가 있으면 전례에 의해 자손의 벼슬을 막고, 백은 20냥쯤을 징수(세종 5/12/29)

사실에 의거하여 바르게 기록하면, 찬미하고 비난할 것이 스스로 나타난다. (세종 5/12/29)

⑩ 인사청문회

고려처럼 9품에서 1품까지 대간에게 서경(署經)시켜 등용하자는 사헌부의 건의 (세종 5/5/17)²

조종(祖宗, 태조 및 태종)의 성헌(成憲)을 변경함이 옳지 못하니, 전례대로 시행 (세종 5/9/4)

⑪ 공무원 정리

ㄱ. 출입 인원 고찰 및 출입증[信符] 발부 : 총 7823 (?7824)명

국사 관련 공무원 수 (세종 5/1/24) : 7233명

² 지금부터는 4품 이상의 관원은 교명(敎命)을 내리고(임금이 직접 임명), 5품 이하의 관원은 문하부(門下府)에서 직첩(職牒)을 주게 하라. (태조 1/12/22)

이때부터 1품(品) 이하를 모두 대성(臺省)에서 다시 서경(署經)하였다. (정종 2/2/4)

4품 이상 관교법(官敎法)을 부활하라고 명하였다. 임금이 "조사(朝謝)의 법은 옛 역사에는 없었으니, 마땅히 4품 이상 관교(官敎)의 법을 부활하도록 하라." 하였다. 처음에 안성·이천우·이지승·유정현의 고신(告身)이 대성(臺省)에서 서경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(태종 13/10/22)

대전(大殿), 공비전(恭妃殿), 의빈전(懿嬪殿, 태종 후궁) 인원 (세종 5/2/10) : 590(?591)명

ㄴ. 감원

각 관사의 제조·제거·별좌 등의 인원을 가감하다 (세종 5/2/9) : -64 +6

서울과 지방의 일 없는 관원을 토대한 것이 모두 합하여 69원이며, 녹을 감한 것이 2천 5백여 석에 이르렀으니,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국용의 부족을 우려한 때문이다. (세종 5/12/7)

ㄷ. **녹관체아**祿官遞兒는 녹만 받고 직책은 맡지 않으니 다 없애버림 (세종 5/4/21)

ㄹ. **순환근무** (외관직자에게는 경관직을, 경관직자에게는 외관직 제수, 세종 5/12/11)

⑫ 수령

ㄱ. **고과**考課

경외 관리(京外官吏)에 대한 임기의 달수[箇月]의 법을 의논하게 하였다. (세종 5/5/22)

태조가 창업하면서 폐단을 개혁하려고 지방 관리를 30월로 만기를 정했고, 서울에 있는 관리도 자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-중략- 태종께서 옛날을 회복하려 하여 바로 고만(考滿)하는 법을 세웠으나 -중략- 양법(良法)을 거행하기가 어렵게 되어(세종 5/6/5)

“수령의 치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은 전에 의해 일곱 가지 일³로써 상론(商論) 확정하여, 마음씀이 백성을 사랑하고, 이익을 일으키고 해되는 점을 제거해, 은혜가 백성에게 미친 자는 상등으로 하고, 재주와 덕은 비록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나, 근근히 그 직책을 지켜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는 중등으로 하고, 용렬하여 임무를 감내하지 못한 자와, 비록 재능은 있더라도 오로지 일을 새로 하는 것만 일삼아, 폐해가 백성에게 미친 자는 하등으로 하소서.” (세종 5/7/20)

ㄴ. **수령고소금지법**

수령들이 먼저 소문을 듣고 감사가 살필 때 자기 과실을 감추므로 알아낼 수 없다(세종 5/6/23)

ㄷ. **권한위임**

³ 《경국대전》 이전(吏典) 고과조(考課條)에 실려 있는 수령칠사(守令七事)

임금이 서무(庶務)를 친히 결재하면 -중략- 관리들에게 게으른 마음이 생길 것 (세종 5/7/3)

⑬ 인재등용의 원칙

"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선무인 것이다." (세종 5/11/25)

(6) 君臣<兄弟=義<悌=禮<倫

두 사신이 관반(館伴) 황희와 같이 서로 말하기를 "오늘 잔치에 전하께서 효령군(孝寧君)이 술을 돌릴 때에 어찌하여 일어서시었는가." 하니, 희가 말하기를 "군신(君臣)의 분의(分義)로서 진실로 이와 같이 할 것은 없으나, 전하께서 일어서신 것은 천륜을 중히 여긴 것이다." (세종 5/4/7)

(8) 국가 비전 생생지락(生生之樂) (세종 5/7/3)

2. 인물열전

(1) 성석린

태조가 잠저(潛邸)에 있을 때부터 석린을 가장 중히 여겨 -중략- 네 임금을 섬겨(세종 5/1/12)

(2) 태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

예조(禮曹)에 교지(教旨)를 전하기를 "임귀년(任龜年) · 이안유(李安柔) · 양여공(梁汝恭) · 황거정(黃居正) · 이개지(李開之)의 아들에게 국가의 시험을 보도록 허용하라." (세종 5/1/14)

청부현(靑臯縣)은 소현왕후의 고향이기에 진보현(眞寶縣)을 합하여 군으로 승격시켜 청보군이라 하였는데(세종 0/9/25), 송생현(松生縣)을 옮겨다 합쳐서 청송군(靑松郡)으로 (세종 5/10/27)

(3) 궁궐

① 내부자의 절도 및 유착

내수(內豎) 김부(金富) · 윤덕인(尹德仁) 등이 내선(內膳)을 훔쳐 가지고 나가다가 문 지키는 사람에게 잡히니 -중략- 지신사(知申事) 조서로(趙瑞老)와 대언(代言) 곽존중(郭存中) · 한혜(韓惠) 등은 말이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, 먼저 자수(自首) (세종 5/2/9)

그대들이 다른 사람의 법 위반을 규탄하는 것이 직책인데,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(세종 5/2/11)

사정을 알면서 방관한 봉사주부(奉常注簿) 김치명과 주서(注書) 이백첨 처벌 (세종 5/2/17)

민보문(閔普文)이 선공부정(繕工副正)이 되었을 때에, 대비(大妃) 재궁(粹宮)에 쓰다 남은 칠을

훤쳐서 지신사(知申事) 원숙(元肅)과 대호군(大護軍) 원목(元穆) 등에게 나누어 준 죄 -중략- 민보문은 곤장 80대를 치고, 원목과 원숙은 관직을 파면 (세종 5/2/11)

cf) 대사헌 원숙이 소갈병(消渴病)으로 휴가에 있었는데, 임금이 그 형 대호군(大護軍) 원목(元穆)을 불러 이르기를 "그대의 아우에게 관직을 그만두게 한 것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병을 치료하게 하라." 라고 하면서, 인하여 황감(黃柑) 70개를 내려 주었다. (세종 5/1/2)

② 예문대교藝文待敎 양봉래梁鳳來가 조회에서 코를 골고 침을 흘려 불경하였으니 죄주기를 사헌부에서 청했으나 용서 (세종 5/2/12)

③ 경녕군(태종의 서장자)

"경녕군 비의 추악(원경왕후, 태종의 상중에 기생 일점홍을 불러들임)을 나도 당연히 용서할 수 없으나, 다만 양녕이 종사(宗社)의 죄를 얻어 이미 밖으로 내쫓겼는데, 이제 또 경녕이 뒤를 이어 일어나니, 종실(宗室)의 변고(變故)는 가히 한심 한일이다. -중략- 그대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종실로서 보전할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." (세종 5/5/11)

④ 환관

ㄱ. 부정 청탁한 김수

환관(宦官) 김수(金壽)가 지난해 9월에 영평군 윤계동(尹季童)에게 청하여, 그 아버지 김언(金彦)에게 반당체아(伴倘遞兒) 부사정(副司正)의 직(職)을 주게 하였다. 임금이 두 번이나 언(彦)에게 직(職)을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, 수(壽)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. (세종 5/5/27)

"시사(時事)나 세쇄(細瑣)한 일들은 대언(代言)이 일일이 친히 계(啓)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들(환관)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였는데, 근자에 김수(金壽)가 제수(除授)하는 동안에 그 틈을 타서 거짓으로 전달하였다. 금후로는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대언이 두 조계(朝啓)에서 계달(啓達)하여 시행할 것이며, 오직 마패(馬牌)의 출납이나, 조신(朝臣)의 숙배(肅拜) 등의 일은 소관(小官) 윤길(尹吉)을 시켜 들어와 계(啓)하게 하고, 만일 긴급한 일이 있으면 본문(本文)을 갖추어 내전으로 들이면 내가 친히 보고 결단하겠다." (세종 5/6/2)

ㄴ. 왕자를 때린 입수

왕자를 능욕하니, 왕자가 주먹으로 수의 뺨을 때렸다. 수도 역시 손으로 왕자의 어깨를 쳐서 흔적이 생길 정도였다. (세종 5/6/5)

(4) 양녕대군

불충·불효 내역 (세종 5/2/16)

"장차 교지(教旨)로써 먼저 양녕에게 보이려 하니, 그것을 돌리라." (세종 5/3/11)

(5) 태종의 멘토 한상경의 즐기 (세종 5/3/7)

(6) 문중

세자는 나이 겨우 10세인데도, 용모가 옥처럼 부드럽고 읍양(揖讓)과 보추(步趨)가 예절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, 사신이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. (세종 5/8/22)

(7) 비서관 조서로趙瑞老 (아버지는 개국공신 조반趙胖)

내수(內豎) 김부(金富) 등이 내선(內膳)을 훔친 사건에 조서로가 연루됐으나 용서 (세종 5/2/9)

대사헌 하연(河演)이 "비밀히 계할 일이 있사오니 좌우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의정(議政) 이원(李原) 만을 남게 하시기를 청합니다. -중략- 전 관찰사 이귀산(李貴山)의 아내 유씨(柳氏)가 지신사(知申事) 조서로와 간통하였으니, 이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." (세종 5/9/25)

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를 참형에 처하고, 지신사 조서로를 영일로 귀양 (세종 5/10/8)

(8) 박사청의 즐기 (세종 5/11/9)

3. 세종의 공부 (세종 5/12/23)

cf) "내가 이학(理學)에 대해서 비록 능통하지는 못하지만, 그러나 이미 모두 보기는 했는데, 유독 사학(史學)만은 익숙하지 못하였다. 일찍이 《통감강목(通鑑綱目)》은 읽어서 근원을 참고했고, 여러가지 책을 읽어서 거의 의심할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더니, 이제 또 이 책을 읽어봄에 자못 의심나는 곳이 있으니, 학문이란 진실로 가위 무궁한 것이로다." (세종 8/12/10)

윤형(尹炯)이 경전(經典)과 사서(史書)를 뒤섞어 끌어다가 부주(敷奏)하기를 상세하고 밝게 하니, 세종이 말하기를 "경(卿)은 책을 읽을 때에 몇 번 보아서 이와 같이 기억할 수 있는가?" 하니, 대답하기를 "신은 겨우 30번 정도 읽습니다." 하니, 세종이 말하기를 "나는 여러 책을 모두 1백 번 읽었고, 《초사(楚詞)》와 《구소수간(歐蘇手簡)》만은 30번 정도였을 뿐이다." (단종 1/6/13)

* 열쇠말 '경세제민經世濟民'
vs
연민憐憫 (전체 112건 중 세종대 52건 검색)
Economy (←라틴어oecónómīa=oikos (house) + nomos (manage)=가정경제 관리)